

AI·디지털 업무 규정

제정 : 2017. 09. 29.
1차 개정 : 2025. 03. 04.
2차 개정 : 2026. 02. 0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AI·디지털, 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6. 2. 5.>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업무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4. “정보화자산”이라 함은 서버·스토리지·통신장비 등 하드웨어, OS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 PC·프린터 등의 사무용전산기기 및 OA용 소프트웨어 등을 총칭한다.
5.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유·무선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정보통신 수단에 의하여 부호, 문자, 음성, 영상 등의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6. “전산센터”라 함은 서버·스토리지·통신장비 등 주요 정보화자산이 설치·운영되는 장소를 말한다.
7. “개발”이라 함은 업무를 정보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및 반영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

램에 대한 수정 및 추가개발을 포함한다.

8. “운영”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이 본래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행해지는 각종 정보시스템, 정보화자산 등의 유지관리, 사용자 요구에 따른 각종 조회 및 출력업무 등 제반활동을 말한다.
9. “외부용역”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의 기획·개발·운영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재해복구”라 함은 자연재해, 인위적 재해 등 재해 발생 시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비상계획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해복구시스템”라 함은 재해 발생 시 비상계획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복구하기 위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2. “정보화담당자”라 함은 정보화, 정보보호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부서별로 지정되는 직원을 말한다.
13. “데이터”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14. “[AI·디지털전략담당부서](#)”라 함은 전사 [AI·디지털](#), 정보화 전략 수립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6. 2. 5.>
15. “IT인프라·정보보안담당부서”라 함은 정보시스템, 정보화자산의 관리 및 정보보안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6. “시스템개발담당부서”라 함은 정보화 개발,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IT서비스상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7. [“인공지능” 또는 “AI”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6. 2. 5.>
18. [“인공지능윤리” 또는 “AI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

다. <신설 2026. 2. 5.>

제3조(정보화담당자) IT인프라·정보보안담당부서장은 각 부서에 정보화담당자의 지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서별 정보화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부서별 정보화 추진에 관한 요구사항 취합 및 전달
2. 부서별 정보보안 활동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화 및 정보보안에 관하여 IT인프라·정보보안담당부서장이 요청한 사항

제4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보화업무요령」, 「정보보안요령」, 「인공지능(AI) 활용 및 관리요령」, 「한국무역보험공사 공공데이터 관리 요령」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처리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2. 5.>

제 2 장 AI디지털전략위원회 <개정 2026. 2. 5.>

제5조(AI디지털전략위원회) AI·디지털, 정보화 전략 및 정보보호 계획수립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AI디지털전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6. 2. 5.>

[제목개정 2026. 2. 5.]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필요시 유관부서의 장을 최대 2인까지 위원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1. AI·디지털사업본부장 <개정 2026. 2. 5.>
2. 경영기획담당부서장
3. 영업기획담당부서장
4. 단기정보험기획담당부서장

5. 중장기정보험기획담당부서장

6. 리스크관리담당부서장

7. AI·디지털전략담당부서장 <개정 2026. 2. 5.>

② 위원회의 의장은 AI·디지털사업본부장이 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AI·디지털전략담당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2. 5.>

③ 위원회 관련 업무는 AI·디지털전략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6. 2. 5.>

제7조(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사 AI·디지털 전략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2. 5.>

2. 정보화 전략 및 정보보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책상 중요하거나 시스템 구조 및 환경 등에 영향이 큰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그러한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심의 방법) 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위원회 업무 담당부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필요시 사장에게 보고한다.

제 3 장 정보화 개발 및 운영

제11조(업무소관부서의 역할)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소관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시스템 개발 및 변경 요청
2. 정보화 추진의 시급성,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제시
3. 명확한 요구사항 제시
4. 테스트케이스 작성, 테스트 수행 및 결과 확인
5. 응용 프로그램 기능 및 서비스의 요구사항 반영 적정성 확인
6. 입력 및 수정 데이터의 정확성 확인
7. 자료요청 및 요청자료 정확성 검증
8. 기타 정보화 추진 시 시스템개발담당부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2조(정보화 개발) ① 시스템개발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하며, 사전에 개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개발여부, 개발범위, 개발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다.

1. 정보화개발계획에 포함된 업무
2. 각 부서가 개발요청을 한 업무
3. 기타 시스템개발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개발에 대한 세부 절차는 정보화업무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데이터 관리) ① 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의 입력, 수정 및 삭제(이하“데이터 처리”라고 한다)는 해당 업무 담당직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소관부서장은 해당 직원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소관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상 데이터 처리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모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시스템개발담당부서앞 데이터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 ③ 제2항의 업무소관부서의 데이터 처리 요청 처리시 시스템개발담당부서는 데이터의 일관성과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④ 업무소관부서는 제2항의 데이터 처리 요청에 따른 시스템개발담당부서의 데이터 처리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정보화자산 관리

제14조(정보화자산 관리) IT인프라·정보보안담당부서장은 정보화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지적재산권 보호) ① 공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적법한 사용허가권을 취득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개발하여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권리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 장 비상대책 관리

제16조(비상대책 수립·운동) 장애·재해·해킹·테러 등 정보시스템의 비상사태를 대비한 재해복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사태시 「정보화업무요령」 및 「정보보안요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재해복구절차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6 장 정보보안

제17조(정보보안) 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전산센터, 데이터, 정보화자산, 사용자, 바이러스, 재해복구 등과 관련한 정보보안 사항은 「정보보안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장 외부용역

제18조(외부용역) 정보시스템의 개발, 운영, 관리 등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외부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2. 업무량 또는 업무성격상 공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제19조(업무소관부서의 정보화 외부용역사업 추진) ① 업무소관부서장이 정보화와 관련된 외부용역사업 추진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IT인프라·정보보안담당부서장 및 시스템개발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공사 내부시스템과의 호환성
 2. 시스템 구축, 테스트, 검수 등 일련의 절차
 3. 부서별 업무범위 및 역할
 4. 구축 후 유지관리 등 관리 업무
- ② 업무소관부서장은 외부용역사업에 따른 시스템 구축시 「계약요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물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IT인프라·정보보안담당부서장 및 시스템개발담당부서장 앞으로 유지관리 업무의 인수인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 장 인공지능(AI) <신설 2026. 2. 5.>

제20조(인공지능) 공사의 인공지능(AI) 도입·관리 및 활용 확산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공지능(AI) 활용 및 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2. 5.]

제21조(인공지능책임관의 지정) 공사의 효율적인 AI 업무 추진을 위하여 AI 전략을 담당하는 본부의 장을 “인공지능(AI)책임관”으로 지정하며, “인공지능(AI)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전사 AI 정책 및 활용계획 수립
2. AI 서비스 개발, 도입 및 관리
3. 임직원의 AI 활용기반 조성 및 AI윤리 내재화
4. 그 밖에 AI 업무에 관하여 “인공지능(AI)책임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2. 5.]

제22조(AI윤리) 공사는 AI 개발 및 활용 등의 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AI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
2. AI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 등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관한 사항
3. 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을 위한 AI의 개발·활용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 2. 5.]

제 9 장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신설 2026. 2.

5.>

제23조(공공데이터 제공·이용 활성화) ① 공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가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공공데이터 관리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2. 5.]

제24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① 공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 혁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처리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2. 5.]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내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IT업무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해 시행 중인 절차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유지한다.

부 칙(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해 시행 중인 절차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유지한다.

② 제4조 및 제20조에서 인용된 「인공지능(AI) 활용 및 관리요령」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인공지능(AI) 활용 및 관리지침」을 준용한다.